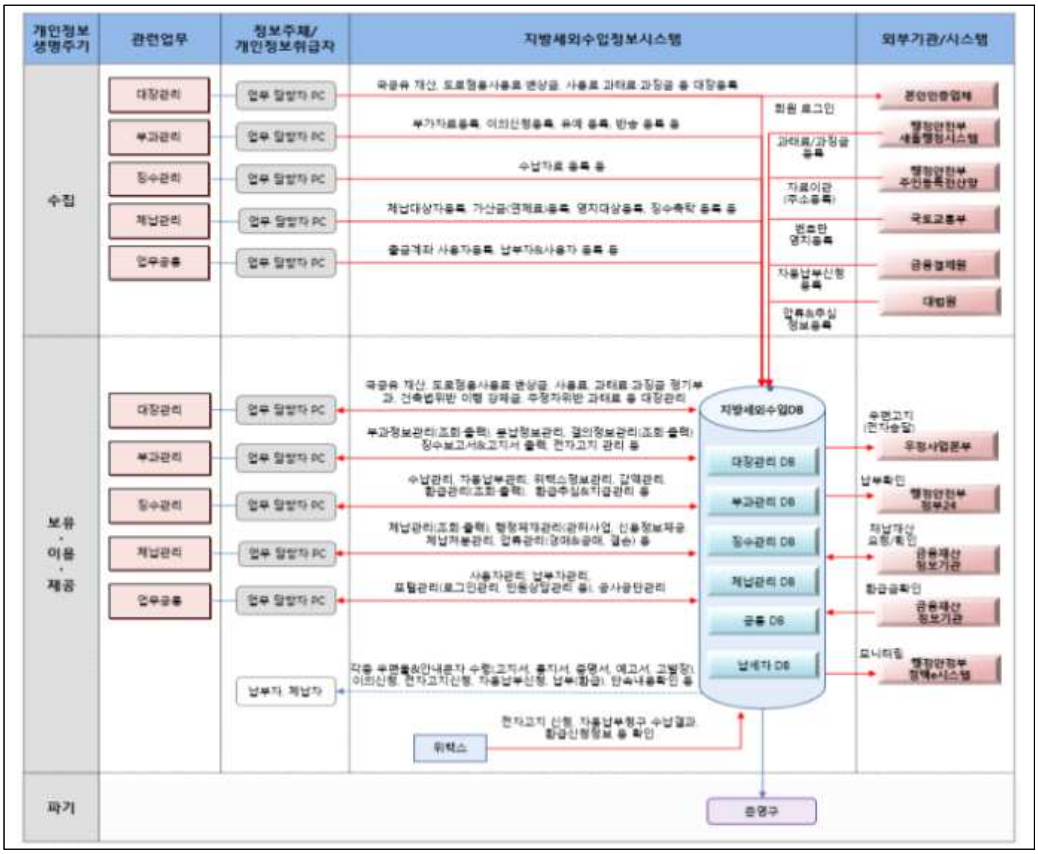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

<table>
<tr><td colspan="2">공공기관 명</td><td colspan="6">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td></tr>
<tr><td colspan="2">평가기관</td><td>㈜씨에이에스</td><td>평가
기간</td><td>2026.05.25
~
2026.06.30</td><td>평가
예산</td><td colspan="2">☐ 1천만원 미만
☐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td></tr>
<tr><td rowspan="6">평가대상시스템 개요</td><td>시스템명</td><td colspan="3">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td><td colspan="2">시스템 구축 또는 변경 일정</td><td>2026. 1. ~
2026. 12</td></tr>
<tr><td>추진개요 및 목적</td><td colspan="6">•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체납관리 등 세무 업무처리 지원
• 세외수입 관계법 개정 등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사용자 중심의 편의 기능 제공
• 신규 구축된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성능 향상 필요</td></tr>
<tr><td rowspan="4">추진성격</td><td>대상여부</td><td colspan="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5만 명 이상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td><td rowspan="2">추진예산</td><td rowspan="2">102,650,562천원
(VAT 별도)</td></tr>
<tr><td>추진주체</td><td colspan="2">행정안전부</td></tr>
<tr><td>추진근거</td><td colspan="2">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업무의 정보화)</td><td>추진유형</td><td>☐ 신규 구축
☐ 변경(고도화)
☑ 운영</td></tr>
<tr><td>신기술 유형</td><td colspan="4">-</td></tr>
<tr><td>주요내용</td><td colspan="6">•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 지방세외수입 부과, 징수, 수납, 체납관리 등 내·외부 운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DB, SW 등 변경사항 반영
- 신규 시스템 도입에 따른 시스템 안정화,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능개선 요구사항 적용 및 정보연계 확대
• 세외수입 관련 법·제도 개정 등 외부환경 적기 반영
- 지방세외수입 관련 법·제도 개정에 따른 DB, SW, 코드 변경 적용
- 법개정 관련 응용SW 개선 및 지방세외수입 인프라(HW·상용SW) 증설
- 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조직 개편에 따른 과세자료 변환 등 지원
•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의견수렴 및 기술지원
- 지방세외수입정보화 발전협의회, 현장방문, 사용자 교육, 자치단체 요청 등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 및 SW 반영
- 장애예방 및 대응, 시스템 연계, 자료이관 등 기술지원
- 지방세외수입 업무별 사용자 교육 및 사용자 운영지원 등</td></tr>
<tr><td>운용체계 변경내용</td><td colspan="6">해당하지 않음</td></tr>
<tr><td></td><td>파일명</td><td>정보주체 수</td><td colspan="2">개인정보 항목</td><td>제3자 제공</td><td>개인정보 처리 목적</td></tr>
<tr><td></td><td>세외수입</td><td>5,420</td><td colspan="2">이름, 집연락처, 집주소,</td><td>국토교통부</td><td>세외수입 감액관리</td></tr>
</table>

개인정보파일개요	감액관리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부동산거래시스템	
	세외수입 결손관리	9,335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금융결제원, 중계처리시스템,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매출채권압류시스템, 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출자금압류시스템,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시스템, PG사(VAN), 신용정보기관 시스템, 한국자산관리공사, 조세정리시스템, 국세청, 국세행정시스템(NTIS), 관세청,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시스템	세외수입 결손관리
	세외수입 과오납관리	1,329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금융결제원, 자동이체처리센터,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매출채권압류시스템, 행정안전부, 통합상시모니터링시스템(청백e)	세외수입 과오납관리
	세외수입 부과관리	107,347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시스템/바른땅시스템, 우정사업본부, e-그린시스템	세외수입 부과관리
	세외수입 수납관리	99,227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금융결제원 인터넷전자납부시스템	세외수입 수납처리
	세외수입	24,940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금융결제원,	세외수입 압류관리

	압류관리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중계처리시스템,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매출채권압류시스템, 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출자금압류시스템,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시스템, PG사(VAN), 신용정보기관 시스템, 한국자산관리공사, 조세정리시스템, 국세청, 국세행정시스템(NTIS), 관세청,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시스템	
	세외수입 체납관리	49,762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시스템	세외수입 체납관리
개인정보 처리 흐름분석	1. 개인정보 처리 흐름 -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은 지방세외수입 부과, 징수, 수납, 체납관리 등을 위해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안전부 등과 통합연계시스템을 통해서 과세자료정보, 납세자정보, 체납자정보, 사용자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유 및 이용함. - 남원시 지방세외수입 업무담당자는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부과/징수/체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DB에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 -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관련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이 준영구이므로 DB에서 삭제하지 않음 2. 총괄 개인정보 흐름도				

<table>
<tr><td></td><td colspan="2">
</td></tr>
<tr><td rowspan="2">영향평가기준</td><td>평가기준 변경사항 및 사유</td><td>-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제2025-7호, 2025.9.5.,일부개정) 제10조(평가영역 및 평가분야), 제11조(평가항목)에 의거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법령 개정 및 대상 시스템의 특성에 따른 평가항목을 가감하여 평가 항목으로 구성함
-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시스템은 국가표준보급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한('22.3) 평가항목은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단, 행정안전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지표” 에서 제시한 “자치단체 점검내용”을 포함하여 평가함.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3장)의 8개 항목 제외
.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4장)의 15개 항목 제외
-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5장)은 평가 대상시스템과 해당 사항이 없어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7개 평가분야 37개 항목)</td></tr>
<tr><td>주요 평가기준</td><td>- 2025년 10월 2일에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반영
- 2025년 10월 31일에 시행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반영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2025년 10월 개정) 준용
- 본 평가기관 영향평가 수행방법론 및 대상시스템 특성에 따른 평가지표 가감</td></tr>
<tr><td>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평가</td><td colspan="2"><u>1.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분석평가</u>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파일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업무의 정보화)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자동차관리법』 제74조(과징금의 부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고유식별정보의 처리),</td></tr>
</table>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제72조(변상금의 징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법』 제22조(사용료), 제81조(변상금의 징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음 **2.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술적 조치 사항에 따른 분석평가** -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지방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등 법령 기준 및 보유 목적에 부합된 기간(준영구)으로 산정하여 보유하고 있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제공하고 있음 **3. 영향평가 수행 시 "부분이행", "미이행"으로 평가된 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위험요소 사항** - 연간 개인정보보호 계획을 미 수립시 주기적인 자체점검이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변화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지 못하는 보안 사각지대가 발생 할 수 있음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지 않을 경우 정보주체가 어떤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처리될 수 있는지 알 수 없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이 훼손 및 개인정보 처리 범위를 인지하지 못해 열람·정정·삭제 등 권리행사에 제약이 발생함 -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 비상 연락망 최신화 및 유출 대응 모의훈련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실제 유출 상황 발생 시 조직 구성원들이 절차와 역할을 숙지하지 못해 초기 대응이 지연될 수 있음
위험요인에대한개선조치	주요 위험요소에 따른 개선조치 방안	• 연간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 연간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및 보고 (1.1.2) - 연간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1.2.3) • 정보주체 권리 보장 및 이의제기 절차 수립 - 내부관리계획 정보주체 권리보장 절차 수립 (1.4.1) - 내부관리계획 이의제기 절차수립 및 처리방침에 이의신청서 공개 (1.4.2) •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 보안 및 유출 대응 모의훈련 -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 비상 연락망 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 대응 모의훈련 계획 수립 (1.3.2) • 개인정보처리방침 보완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법적근거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 (3.1.9)
	위험요소에 따른 정보주체 인지사항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이의제기 절차 공개 및 이의신청서 공개 확인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법적근거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 확인

평가결과	•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는 10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 1건을 제외한 9개 항목에서 4개의 항목을 이행하고 있으며, 5개 항목에 대해 부분이행으로 평가하고 있음. • 대상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는 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 1건을 제외한 6개 항목을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음.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는 1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2개 항목을 제외하고 15개 항목에서 14개 항목을 이행하고 있으며, 1개 항목에 대해 부분이행으로 평가하고 있음. •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는 2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5개 항목을 제외하고 22개의 항목을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음. •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 4개 평가분야 30개 항목은 평가대상과 해당사항이 없어 평가에서 제외함.